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73
----------	-------

발의연월일 : 2025. 2. 13.

발 의 자 : 김준혁 · 강준현 · 민병덕
부승찬 · 안태준 · 이기현
이상식 · 이성윤 · 이원택
전진숙 · 정을호 · 정준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를 견제하고 소수 정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둠. 이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의장은 의무적으로 무제한토론을 실시해야 하고, 토론 도중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회의를 중지하지 않으며, 토론이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서류상의 서명만으로 무제한토론이 자동 개시되는 현행 절차는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본래 취지와 달리, 국회 의사 일정을 지연시키거나 정쟁의 도구로 남발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안건 저지를 위해서는 본회의장에 직접 출석하여 의사를 표명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현행 절차는 이를 간과하고 있음. 아울러 의사정족수 미달 시에도 회의를 지속하는 것은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을 저해하며, 토론 종결 직후 즉시 표결하는 방식은 종결 선포 당시의 우연한 재석 상황에 따라 표결 결과가 좌우되는 등 절차적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제한토론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제도 운용의 균형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무제한토론의 실시 요건을 종전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 제출’에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실시동의 제출 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도록 변경함과 동시에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 발의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개시와 종결 절차 간의 형평을 맞춤. 한편, 무제한토론 중이라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 종결 선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 106조의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분의”를 “5분의”로,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을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실시동의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의장은”을 “무제한토론의 실시동의를 동의가 제출된 즉시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무제한토론의 실시동의를 가결된 경우 의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요구서는 요구”를 “실시동의를”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요구서를”을 “실시동의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을 “따라 무제한토론의 실시동의를 가결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3분의”를 “5분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선포한 후”를 “선포하고,”로, “지체 없이”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무제한토론을 요구할”을 “무제한토론의 실시동의를 제출할”로 한다.

다만, 회의 중 제73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

1.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 선포 후 12시간의 범위에서 의장이 정하는 일시
2.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가결된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 선포 후 지체 없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의 실시동의를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 ----- ----- ----- ----- -----5분의---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실시동의를-----. ----무제한토론의 실시동의를 동의가 제출된 즉시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무제한토론의 실시동이 가결된 경우 의장은-----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
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
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
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
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
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
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
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
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
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
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단서 신설>

⑤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
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② -----실시동의는-----

-----.

-----실시동의를-----

-----.

③ -----따라 무제
한토론의 실시동의를 가결되면

-----.
-----.

④ -----

-----.

<후단 삭제> 다만, 회의 중 제
73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
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회의
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

⑤ -----

-----5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⑧ (생략)

⑨ 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분의-----

-----.

⑥ (현행과 같음)

⑦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선포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1.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 선포 후 12시간의 범위에서 의장이 정하는 일시

2.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된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 선포 후 지체 없이

⑧ (현행과 같음)

⑨ -----

-----무제한토론의 실시 동의를 제출할-----.

⑩ (생략)	⑩ (현행과 같음)
--------	------------